

[EU 환경규제 소식]

환경 규제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EU

1. 타이어 라벨제도 법규화 추진

EU의 타이어 라벨 제도에 대한 법규 제정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이미 EU 의회는 지난 4월 집행위가 제출한 초안에 기초하여 1차 독회를 통해 타이어의 연비·안전·소음 라벨제도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채택했다. 이어 7월 3일에 집행위가 유럽의회의 독회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현 EU 의장국인 스웨덴은 타이어 라벨링 제도가 9월말 유럽의회의 제2차 독회를 거쳐 임기인 금년 12월말까지 모든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타이어라벨, 지침이 아닌 규정으로 추진

EU 집행위는 7월초 재작성한 수정안에서 4월초 유럽의회의 요청대로 타이어라벨을 도입하는 법률 형태를 당초 집행위가 제안한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 형태로 바꾸기로 하였다. 규정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다시 이를 제정할 필요 없이 규정 자체가 회원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법적 실효성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고, 국내법 제정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질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타이어 중 소음수준이 가장 낮고 가장 조용한 타이어에 대해 소위 ‘low-mark’를 추가로 표기하자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2년 7월 이전에 제조된 타이어에 대해서는 이 규정 적용을 면제하자는 주장도 반영하지 않았다.

2010년 9월까지 타이어 연료효율성을 계산하는 기능을 포함한 타이어 라벨링 정보 웹사이트를 만들자는 요청 역시 웹사이트 운영 성과에 비해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일정 유형의 타이어

어는 이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제외되는 타이어는 다음과 같다.

- 재생 타이어
- 오프 로드 전문 타이어
- 1990.10.1일 이전에 최초로 등록된 자동차에만 사용되는 타이어
- T-타입의 임시 스페어타이어
- 속도가 시간당 80km 미만인 타이어
- 림 직경(Nominal rim diameter)이 254mm 이하이거나 635mm를 넘는 타이어

소음, 노면 마찰정보, 회전저항성, 연비 표기 의무화

EU가 추진하는 타이어 라벨에는 소음, 노면 마찰정보, 회전 저항성, 그리고 연비가 표기되어야 한다. 소음의 경우 소음 수준을 3개 카테고리(C1, C2, C3)로 삼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이 세 등급 타이어 모두 타이어의 젖은 노면 마찰 정보 등급(wet grip class), 즉, 젖은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마찰에 관한 등급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회전저항이 약한 타이어는 연료소모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도로가 젖어 있을 때 도로와의 밀착성이 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C2와 C3에 속하는 타이어는 회전저항 효율성 역시 표기되도록 규정했다.

유럽 시장에서 세탁기, 냉동고, 냉장고 등에 에너지 효율 카테고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듯이 앞으로는 타이어에도 연비(fuel efficiency)를 표시하도록 하며 등급은 A(best)에서 G(worst)까지 7등급으로 나누었다.

집행위 수정안에 따르면 이 라벨링 규정은 2012년 11월 1

일부터 시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며, 규정 발효 5년 후 이 규정을 검토하여 라벨의 효율성 여부, 재생 타이어로도 이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인지 여부, 새로운 타이어 평가요인이 도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표기되어야 하는 타이어 정보 등을 검토하게 된다.

라벨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마케팅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기술 메뉴얼, 브로슈어, 리플렛, 카탈로그를 포함한 모든 인쇄본과 인터넷, 여타 모든 전자양식에 모두 표기되어야 한다.

2. 탄소세 도입 가능성 검토

스웨덴, EU 탄소세 도입 제안 예정

현행 EU 의장국인 스웨덴이 EU 탄소세 도입을 제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Maud Olofsson 스웨덴 에너지 장관은 7월말 스웨덴 Are에서 열린 비공식 EU 환경 및 에너지 장관 이사회에서 “스웨덴은 탄소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Andreas Carlgren 스웨덴 환경 장관도 탄소세는 기후변화문제 뿐 아니라 EU 회원국들이 당면한 심각한 국가 재정적자 문제에도 관련된 조치라며, 탄소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장관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교두보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금년 말 이전에 탄소세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이 생각하고 있는 탄소세는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변화를 유발시키기 위해 화석 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는 측에 따르면 탄소세는 오염자 지불 원칙을 반영한 조치로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생산비를 올리려는 수단이다.

즉, 오염 제품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기업에 벌과금을 부과함으로써 태도를 바꾸게 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렇게 탄소세로 거두어들인 수입으로 특수 기금을 마련하여 녹색기술 개발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이미 1990년에 이러한 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스웨덴에 따르면 이 조치로 CO₂ 배출량을 20%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외중에 프랑스는 9월 10일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해 탄소 배출량 톤당 17 유로의 탄소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가열시켰다. 사실 프랑스는 현재까지 EU 회원국 중 탄소세 도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역외산 수입제품 탄소세 부과에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

탄소세 자체의 도입에 대해서는 일부 회원국들도 긍정적인 입장이나 역외산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에는 회원국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에서도 미국의 예처럼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따른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배출권 거래제도로 인해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공장을 단순히 역외국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의미함)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EU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2013~2020년간의 EU 배출권 거래제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수정된 제도의 예를 들면 전력 생산 기업은 2020년까지 탄소 배출권을 100% 모두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화학 산업과 같은 중공업 기업은 엄격한 배출권 거래제도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크게 늘려 결국 공장을 역외로 이전시키게 함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환경적 효과가 있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협약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누출 우려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프랑스만이 역외 신흥경제권에 대항하여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경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유일한 EU 회원국이다. 프랑스는 지난 2008년에 배출권 거래 제도를 강화하는 자리에서 국경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EU 국가는 프랑스와 미국이 논의하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 녹색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8년 12월에 배출권 거래제도 수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탄소세 도입 문제는 EU내에서의 논의 대상에서 일단 사라졌으나 미국

이 지난 6월 29일 하원을 통과한 기후변화 법안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다시 불거져 나왔다. 미국 의회는 최근 기후변화법에 미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 이후 국경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프랑스는 금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 회의에서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역외산 수입제품에도 탄소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EU 역외산 수입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유럽보다 환경 규정이 약한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EU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코펜하겐 협상 결렬 시에 대비하여 유럽도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이러한 탄소세 도입 주장에 대해 중국이나 인도가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은 유럽이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선진국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압력에 무조건적으로 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역외산 수입제품 탄소세 부과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코펜하겐 협상에서 합의의 보지 못할 경우에 역외산 수입제품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안에는 반대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라서 설령 EU 차원의 탄소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역외 수입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탄소세 도입안을 제출하겠다는 현 의장국인 스웨덴의 Maud Olofsson 에너지 장관과 Andreas Cargren 환경 장관도 이구동성으로 역외산 수입제품에 대해 보호주의는 피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Matthias Machnig 독일 환경장관도 탄소세 부과는 “제국 주의적인 환경조치로 인식될 것이라며 그러한 조치보다는 오히려 세계 탄소시장 창설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스웨덴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한편 12월의 코펜하겐 회의와 별도로 EU 집행위는 금년 12월 31일까지 탄소 누출이 예상되는 산업 분야 리스트를 작성

한 후 2011년에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출할 예정이다.

3. TV 에코디자인 기준 제정

EU는 2005년에 제정된 에코디자인 지침에 의거하여 TV에 대한 에코 디자인 요건을 새로 제정하였다. 에코디자인 지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에 대하여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친환경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규정으로, EU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에코디자인 기준을 제정해오고 있다.

온 모드, 대기 모드, 오프모드 상태에서 전력 소비량 요건 정해

7월 23일 EU 관보 L191(2009.7.23일자)을 통해 제정된 TV의 에코디자인 요건은 각 세부 기준별로 적용 시기가 다르나 가장 빠르게는 2010년 1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온 모드 상태의 전력 소비량은 TV 세트와 TV 모니터별로 최대 전력 소비량을 규정하였는데, 이들 역시 visible screen 면적의 전력 최대 소비량을 각각 두 단계(2010.8.20일 이후, 2012.4.1일 이후)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대기 및 오프모드 상태의 전력 소비량 요건을 살펴보면, 2010년 1월 7일 이후의 1단계에서는 오프모드 상태에서의 TV 전력 소비량이 1 와트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스탠바이 모드인 경우에도 1 와트(정보를 제공하는 상태에서는 2와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11년 8월 20일 이후의 2단계에서는 오프모드 상태는 0.3 와트, 스탠바이 모드인 경우는 0.5와트(정보 제공시에는 1와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에코디자인 요건 준수 여부 측정방법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회원국 당국은 TV 한 대를 선별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

만일 이 검사 결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 대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데, 추가된 세 대가 모두 기준을 준수해야만 해당 TV가 에코 디자인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에 제정된 에코 디자인 기준은 기술적 진보를 고려하여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 검토 결과는 에코디자인 협의 포럼에 제출되어야 한다.

일부 기준은 2010년 중 적용 시작하므로 관련 업계의 관심 필요

TV는 중요한 가전 소비재로 EU에 따르면 TV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2007년 60 TWh에 달하였고,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20년에는 132 T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TV에 대해서는 현재 폐가전 지침, 유독성 물질 함유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2009년 3월에는 온 모드 상태의 TV에 대해 에너지 효율성 등급 등을 포함한 에코라벨 기준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에코디자인 기준 제정으로 1단계인 2010년 8월 20일 이후부터는 현재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은 TV만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고, 2단계인 2012년 4월 1일부터는 현재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최소 20% 이상인 TV만 판매가 가능하다. 세부 기준별로 준수 기기가 다르나 대기 모드나 오프모드는 2010년 1월 7일부터 적용되므로 관련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4. 휴대폰 충전기 호환성 제고 조치 추진

휴대폰 업계, 충전기 호환성 제고를 위한 MOU 체결

6월 29일 10개 휴대폰 업체가 EU 집행위에 휴대폰 충전기의 호환성을 제고할 것을 약속하는 업계 자율 약속 형식의 양해각서(MOU)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휴대폰 제조업체는 향후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충전기기간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EU 집행위는 안전한 충전기 사용을 보장하는 새로운 EU 표준을 제정하여 업체가 제출한 MOU 이행을 촉진하게 된다.

대상이 되는 휴대폰은 이메일 전송이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데이터 교환기능(data-enabled) 휴대폰으로, USB 데이터 교환이 되지 않는 휴대폰은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 교환기능(data-enabled) 휴대폰만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은 최초의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에는 시중에서 사용되는 모든 휴대폰이 사실상 데이터 교환기능(data-enabled) 휴대폰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휴대폰은 제조 기업별, 모델별로 고유한 충전기를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가 휴대폰을 바꿀 경우 충전기 역시 바꿔야 했다. 따라서 기존 충전기는 성능이나 상태가 멸절된 경우에도 버려졌다.

집행위는 그간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할 업계 자율약속이 없을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가진 EU 차원의 법률을 도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의 약속 제출에도 불구하고 집행위는 이 자율약속이 가능한 신속하게 발효되도록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호환가능 충전기, 2010년 이후 EU 시장에 나올 전망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한 기업은 LG, 모토로라, 노키아, 삼성, 애플, NEC, 퀄컴, RIM, 소니 에릭슨,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10개사로, 이번 약속을 반영한 새로운 호환 가능 충전기를 가진 휴대폰은 2010년 이후 EU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의 Guenter Verheugen 기업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양해각서를 적극 환영하면서 이 약속으로 유럽 내 폐가전 발생량이 줄어들고 사용자의 휴대폰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며, 아울러 업계의 자율약속으로 EU 집행위가 강제성을 가진 법규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의 효력은 지리적으로 EU내에서만 적용되나, 휴대폰 시장이 실제로 글로벌 시장임을 감안할 때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유럽 및 세계 휴대폰 시장은 첫 제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2010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